

제 목 |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교육 이수 문의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 또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전관리계획에 주택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수립(조정)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기술인력 등)은 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목 | 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청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터널 등)을 도급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다른 회사에 전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재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 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목 | 현장 안전시설물 등 개선·개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현장의 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등을 개선·개발하여 당사의 현장에 보급해서 추락, 전도, 협착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개선·개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본사 사용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규정에 의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사 사용비는 「별표2의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등을 개선·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목 |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계상에 대한 문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차량의 측면살수를 고압살수기로 사용하고 살수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비산먼지 방지시설(세륜시설 등)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종류, 현장여건 및 관계법령·기준 등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하여 설치토록하고, 그에 따른 비용계상(정산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도 계약서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투입인력이 살수기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계약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16] 제1항 "다" 목 각 호에 정한 시설과 그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 재료비, 노무비, 시험비 등)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의거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및 정산방법 등 일체)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과 비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은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비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협력사 안전보건조치관련 문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의합니다. 현재 100인 이하 협력사들이 대부분이고, 100인 이상 몇 개 협력사가 도급 사업주의 공장 내 상주하여 작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사업은 건설업 및 시행령 제23조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폐사는 4호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인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00인 이하의 다수의 협력사가 도급 사업주 공장내 상주하고 있는 경우 도급 사업주는 산안법 제29조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또 100인 이하 사내 협력사에 대해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도급 사업주에게 없다면 협력사의 안전보건 지원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는 산재예방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각호는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및 제조업 등이며 제23조 본문에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조업의 경우 100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여러 사업장 존재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문의

질소 인산 및 칼리질비료 제조업 공장, 복합비료 제조업 공장,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공장, 기타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부지 내에 각 공장이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PSM 대상 사업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공장이 있어 PSM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 공장과 관련이 없는 PSM비대상공장에서 사용하는 스팀보일러 일 경우 PSM 대상 설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업종 20201(질소, 인산 및 칼리질비료 제조업) 및 20202(복합비료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설비(또는 공정)는 PSM 대상이며 업종 20209(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및 20129(기타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PSM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팀보일러에서 생산된 스팀을 PSM비대상 공장의 공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팀 보일러는 PSM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